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공무원의 전문성과 기관의 인사운영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보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안 별표1)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데이터 행정 관련 직류를 신설하고 활용도가 낮은 직렬·직류는 통합함

나. 필수보직기간 등 전보제도 개선(안 제16조, 안 제43조, 안 제45조, 안 제45조의2)

소속 장관이 공통·지원부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직류별 선발된 경제공무원도 유사직위 전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과 기관의 인사운영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보제도 개선

다. 외무공무원의 일반직 채용 시 시험면제 확대(안 제22조의2)

현행 외교통상 직렬에 대해서만 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외무영사와 외교정보기술 직렬에 대해서도 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라. 직위해제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산정 방식 정비(안 제32조)

징계로 인해 승진임용제한 중에 있는 자가 직위해제 되는 경우, 각각의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온전히 더하여 적용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14. ~ 6. 23.)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방공무원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2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통상직렬 공무원”을 “제2조제1항각호에 따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근신·영창”을 “근신·군기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휴직하는”을 “휴직하거나 직위해제를 받는”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를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중 “제45조제3항제2호”를 “제45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41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분야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에 따른 1년 이상”을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으로, “2개월”을 “2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휴직하는”을 “휴직 또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으로 임용되는”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후단 중 “보직된”을 “보직된 연구관, 지도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각 기관의 업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 이상

제45조제2항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5호) 중 “공안업무”를 “공공의 안전 관련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2. 공무원이 승진, 강임 등 임용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5. 공무원의 가족과의 거주,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이 징계, 형사사건 수사 등으로 인해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역량 확보 등을 위해 전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를 “제2항제1호(제18조제1항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2호는 승진 또는 강임된 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있되, 같은 항 제9호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을 “4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을 “4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제3항제4호 · 제10호 · 제12호 · 제16호”를 “제3항제6호”로, “따라 지체 없이”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소속 장관 또는 제5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의2의 제목 “(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1항) 제2호 중 “전보하는 경우”를 “전보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으로, “않는다”를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시키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

2.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공무원이 전입하거나 전출할 때

② 제45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부터 5년(제7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2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20년 8월 5일부터,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렬 및 직류 개편에 따른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운수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반행정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경비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방호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야금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금속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잠업 및 농화학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반농업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수산제조·수산증식·수산물검사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반수산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등대관리직렬의 등대관리직류의 5급 이

하 공무원은 해양수산직렬의 표지운영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약제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약무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정보관리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데이터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각각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른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른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교정	교정	부이사관	서기관	교정관	교감	교위	교사	교도
	보호	보호			보호 사무관	보호 주사	보호 주사보	보호 서기	보호 서기보
	검찰	검찰			검찰 사무관	검찰 주사	검찰 주사보	검찰 서기	검찰 서기보
	마약수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사무관	마약수사 주사	마약수사 주사보	마약수사 서기	마약수사 서기보
	출입국 관리	출입국 관리			출입국 관리 사무관	출입국 관리 주사	출입국 관리 주사보	출입국 관리 서기	출입국 관리 서기보
	철도경찰	철도경찰			철도경찰 사무관	철도경찰 주사	철도경찰 주사보	철도경찰 서기	철도경찰 서기보
	행정	일반행정			행정 사무관	행정 주사	행정 주사보	행정 서기	행정 서기보
		인사조직							
		법무행정							
		재경							
		국채통상							
		고용노동							
		문화홍보							
		교육행정							
	회계								
	직업상담	직업상담			직업상담 주사	직업상담 주사보	직업상담 서기	직업상담 서기보	
	세무	세무			세무 주사	세무 주사보	세무 서기	세무 서기보	
	관세	관세			관세 주사	관세 주사보	관세 서기	관세 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무관	사회복지 주사	사회복지 주사보	사회복지 서기	사회복지 서기보
	통계	통계			통계 사무관	통계 주사	통계 주사보	통계 서기	통계 서기보
	사서	사서			사서 사무관	사서 주사	사서 주사보	사서 서기	사서 서기보
	감사	감사		감사관	부감사관	감사 주사	감사 주사보	감사 서기	감사 서기보
	방호	방호		방호 사무관	방호 주사	방호 주사보	방호 서기	방호 서기보	

기술	공업	일반기계	부이사관	기술 서기관	공업 사무관	공업 주사	공업 주사보	공업 서기	공업 서기보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전기							
		전자							
		원자력							
		조선							
		금속							
		섬유							
	농업	일반농업			농업 사무관	농업 주사	농업 주사보	농업 서기	농업 서기보
		식물검역							
		축산							
	임업	생명유전			임업 사무관	임업 주사	임업 주사보	임업 서기	임업 서기보
		산림조경							
		산림자원							
		산림보호							
	수의	산림이용			수의 사무관	수의 주사	수의 주사보		
		산림환경							
	해양수산	수의			해양수산 사무관	해양수산 주사	해양수산 주사보	해양수산 서기	해양수산 서기보
		일반해양							
		일반수산							
		어로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계							
	기상	수로			기상 사무관	기상 주사	기상 주사보	기상 서기	기상 서기보
		해양교통 시설							
	보건	표지운영			보건 사무관	보건 주사	보건 주사보	보건 서기	보건 서기보
		기상							
	의료기술	지진			의료기술 사무관	의료기술 주사	의료기술 주사보	의료기술 서기	의료기술 서기보
		보건							
	식품위생	방역			식품위생 사무관	식품위생 주사	식품위생 주사보	식품위생 서기	식품위생 서기보
		의료기술							
	의무	식품위생			의무 사무관				
		일반의무							
	약무	치무			약무 사무관	약무 주사	약무 주사보		
		약무							

기술	간호	간호	부이사관	기술 서기관	간호 사무관	간호 주사	간호 주사보	간호 서기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 사무관	간호조무 주사	간호조무 주사보	간호조무 서기	간호조무 서기보
	환경	일반환경			환경 사무관	환경 주사	환경 주사보	환경 서기	환경 서기보
		수질							
		대기							
	항공	폐기물			항공 사무관	항공 주사	항공 주사보	항공 서기	항공 서기보
		일반항공							
		조종							
	시설	정비			시설 사무관	시설 주사	시설 주사보	시설 서기	시설 서기보
		관제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지적							
		측지							
	방재안전	교통시설			방재안전 사무관	방재안전 주사	방재안전 주사보	방재안전 서기	방재안전 서기보
		도시교통							
		설계							
		시설조경							
	전산	디자인			전산 사무관	전산 주사	전산 주사보	전산 서기	전산 서기보
		방재안전							
	방송통신	전산개발			방송통신 사무관	방송통신 주사	방송통신 주사보	방송통신 서기	방송통신 서기보
		전산기기							
		데이터							
		정보보호							
	방송무대	통신사			방송무대 사무관	방송무대 주사	방송무대 주사보	방송무대 서기	방송무대 서기보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운전	방송기술			운전 사무관	운전 주사	운전 주사보	운전 서기	운전 서기보
		방송무대 기술							
	위생	방송제작			위생 사무관	위생 주사	위생 주사보	위생 서기	위생 서기보
		위생							
	조리	사역			조리 사무관	조리 주사	조리 주사보	조리 서기	조리 서기보
		조리							

관리 운영	토목운영	토목운영				토목운영 주사	토목운영 주사보	토목운영 서기	토목운영 서기보
	건축운영	건축운영 목공운영				건축운영 주사	건축운영 주사보	건축운영 서기	건축운영 서기보
	통신운영	통신운영				통신운영 주사	통신운영 주사보	통신운영 서기	통신운영 서기보
	전화상담 운영	전화상담 운영				전화상담 운영 주사	전화상담 운영 주사보	전화상담 운영 서기	전화상담 운영 서기보
	전기운영	전기운영				전기운영 주사	전기운영 주사보	전기운영 서기	전기운영 서기보
	기계운영	기계운영 영사운영				기계운영 주사	기계운영 주사보	기계운영 서기	기계운영 서기보
	열관리 운영	열관리 운영				열관리 운영 주사	열관리 운영 주사보	열관리 운영 서기	열관리 운영 서기보
	화공운영	화공운영				화공운영 주사	화공운영 주사보	화공운영 서기	화공운영 서기보
	선박항해 운영	선박항해 운영				선박항해 운영 주사	선박항해 운영 주사보	선박항해 운영 서기	선박항해 운영 서기보
	선박기관 운영	선박기관 운영				선박기관 운영 주사	선박기관 운영 주사보	선박기관 운영 서기	선박기관 운영 서기보
	농림운영	영림운영 원예운영				농림운영 주사	농림운영 주사보	농림운영 서기	농림운영 서기보
	산림보호 운영	산림보호 운영				산림보호 운영 주사	산림보호 운영 주사보	산림보호 운영 서기	산림보호 운영 서기보
	보건운영	보건운영				보건운영 주사	보건운영 주사보	보건운영 서기	보건운영 서기보
	사무운영	조무운영				사무운영 주사	사무운영 주사보	사무운영 서기	사무 운영 서기보
		타자운영							
		전산운영							
		제도운영							
		필기운영							
		사서운영							
		편집운영							
		집배운영							
		기상관측 운영							
		감식운영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 ⑦ (생	략)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지방공무원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제22조의2(외무공무원의	경력경	제22조의2(외무공무원의	경력경	
쟁	채용등)	쟁	채용등)	
외무공무원 중 「외		외무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		
무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외교통상직렬 공무원		
을		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		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		
용		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등을 면제한다.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생	략)	① (현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행과 같음)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② -----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		-----		
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		-----		
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u>근신·영창</u> 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 ----- <u>근신·군기교육</u> ----- -----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u>휴직하는</u>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③ ----- ----- ----- ----- ----- ----- <u>휴직하거나 직위해제를 받는</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제33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 ----- ----- ----- ----- ----- ----- ----- ----- -----

수에 대하여 <u>별표 5</u> 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 <u>별표 5의 범위</u> ----- ----- <u>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① (생략)	제34조의2(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보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② ----- ----- ----- ----- ----- ----- <u>제45조제3항제1호</u> ----- ----- ----- ----- -----.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② (생략)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③ ----- ----- ----- -----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⑩ (생략)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
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
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
여야 한다.

1. (생략)

2. 제42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1년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41조제1항제6호에 따른 1

-----.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분야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

1. (현행과 같음)

2. _____

 _____ 제13조에 따른 6
개월 이상 _____

----- 2주

3. -----

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생략)

② ~ ⑧ (생략)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채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

----- 휴 -----
직 또는 「재외공관주재관 임
용령」에 따른 주재관으로 임
용되는 -----

4.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구관, 지도관 및 ----- ----- ----- --.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②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2. 각 기관의 업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 이상
2. (생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4. ----- 제1호, 제2호 및 제3호----- -----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③ ----- ----- ----- --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 ---
1. 해당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삭제>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2. 공무원이 승진, 강임 등 임용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신설>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생략)	<삭제>
3.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공무원이 징계, 형사사건 수사 등으로 인해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 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기 직전에 재직하였던 직급을 말한다)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공무원의 가족과의 거주,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설>	3. ----- ----- ----- 공공의 안전 관련 업무----- ----- -----
5.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직렬 공무원이 공안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 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역량 확보 등을 위해 전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삭 제>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삭 제>	14.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삭 제>
8.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삭 제>	15.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적합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삭 제>
9.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시·군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삭 제>	16.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10.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	<삭 제>
11.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삭 제>		
12.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8조의5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삭 제>		

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무분야를 별도로 지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
관은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는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
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
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부터 제7
호까지, 제9호, 제13호 및 제14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전보할
수 있되, 같은 항 제9호의 경우
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
한 직위로 전보(소속 장관이 같
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
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생 략)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⑤ (현행과 같음)

⑥ -----

----. --- 제2항제1호(제18조제
1항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임용
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3항제1
호부터 제5호까지(제2호는 승진
또는 강임된 공무원을 그 직급
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에 한정한다)--- 있다.

1. (현행과 같음)

2. -----

·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
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
관 내에서는 4년. 다만, 인사
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의3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
인인 공무원을 건강 등의 사
유로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2
년으로 한다.

2의2. 법 제28조제2항제7호(교
육부·행정안전부 소속 공무
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경우는 제외하
다)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3년

3.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
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
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
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0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
유로 채용된 공무원: 소속 장

----- 4년. -----

-----.

<삭 제>

3. -----

----- 4년

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4. (생략)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 또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제3항 제4호·제10호·제12호·제16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 장관은 해당 전보를 사전 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반복 업무, 민원·규제·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 중 소속 장관이 사전 승인 적용의 예외로 정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⑧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

4. (현행과 같음)

⑦ -----

----- 제3항제6호-----

----- 따라 -----

⑧ -----

용된 날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소속 장관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을 말한다)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⑨ ~ ⑫ (생략)

제45조의2(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 <신설>

----- 제5조제2항-----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시키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
2.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공무원이 전입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295